2013년 10월 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.smba.go.kr
*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10월 7일(월) 12:00 이후 보도 가능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: 중기청 해외시장과 • 과장: 김대희(042-481-4465) • 사무관: 전세희(042-481-4575)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• 과장: 정창석(02-2164-0025) • 주임: 신동일(02-2164-0083)

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해외규격인증지원
중기청 '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' 시행

- 총 100억원 규모 1,100여개 기업 지원, 10월 8일부터 신청 · 접수 -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(TBT)에 대응하고,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'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'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특히 이번 추가지원은 추경예산(100억원)을 통해 그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분야별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 중소기업에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.

□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,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~90% (1개 인증당 최대 5천만원까지) 비율로 차등지원한다.

<지원비율>

구 분	지원비율	기 준
예비수출기업	90%	내수기업(10만불 미만)
수출유망기업	60%	수출실적 500만불 미만
글로벌강소기업	40%	수출실적 5,000만불 미만

○ 특히 의료기기, 건축자재, 에너지, 방폭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, 인증비용 부담이 큰 고부가가치 · 고비용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원 까지로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했으며,

○ FTA 체결 및 서부지역 및 내수시장 개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은 중국 및 동남아, 남미 등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지원도 대폭 강화된다.

○ 또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청 선정 우수조달기업(PQ기업)에 대한 지원 및 해외조달 등록에 필요한 규격인증비용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.

지원분야	지원대상
▪ 고부가가치·고비용 해외규격인증 (최대 5천만원)	- 3,000 만원 이상 고가, 고부가가치 인증 - 의료기기, 건자재, 군사장비, 방폭, 건설기계, 케이블, 에너지, 화학물질 등
▪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 지원 (최대 2천만원)	- 미국, 일본, 유럽(EU)을 제외한 모든 국가인증
▪ 강제성/글로벌기업 인증 발굴 지원 (최대 2천만원)	- 182개 규격 이외의 모든 인증
▪ 인증갱신지원 (최대 7백만원)	- 해외규격인증획득 대상분야(182개 규격인증)
▪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 (최대 5백만원)	- 중진공 해외대형유통망 진출 선정기업
▪ 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(최대 5백만원)	- 조달청 우수조달기업 중 해외조달 유망선정기업
▪ 해외조달 진출지원(선택옵션) (최대 3백만원)	- 강제성/글로벌인증분야, 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해외조달 진출시 소요되는 시험 · 인증비 등 지원(선택옵션)

□ 신청접수는 **10월 8일(화)부터** 이며, **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(www.exportcenter.go.kr)**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○ 추가지원 사업은 총 5차에 걸쳐 모집 및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며,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1차 사업	2차 사업	3차 사업	4차 사업	5차 사업
신청·접수	'13.10.8~11.7	12.1~12.31	2.1~2.28	4.1~4.30	6.1~6.30
평가·선정	11.8~11.22	'14.1.1~1.20	3.1~3.20	5.1~5.20	7.1~7.20
협약체결	11.25~11.30	1.21~1.31	3.21~3.31	5.21~5.31	7.21~7.31

□ 또한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,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. **(10월14일(월) ~ 10월21일(월), 각 지방청)**

* 설명회 일정 : 공고문 참조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붙임 :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(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) 공고문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전세희 사무관(☎ 042-481-457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> 공고문
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- 호

2013년『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(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)』시행계획 공고

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**2013년『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(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)』시행계획**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0월 8일
중 소 기 업 청 장

1. 사업개요

□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**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**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**해외 규격인증을 획득**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**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**

2. 신청자격

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□ 지원제외 사유(**※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**)

1)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.
다만,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

2)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(2012, 201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중인 기업은 다른제품, 다른 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)

3)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
4)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(단, 제품분야별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)

□ **우대지원대상(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우선 선정)**

※ 해당분야가 있는 사업은 해당분야에 한함

-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발급기업(유효기간 이내)
- 글로벌강소기업(유효기간 이내) 및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(전년도 및 당해연도)
- HIT 500 선정기업(전년도 및 당해연도), 해외대형유통망 진출기업(전년도 및 당해연도)
- 조달청 PQ-100선정기업(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분야에 한함)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에 의한 소기업(인증갱신지원에 한함)
- 중소기업청과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하는 희망엔지니어적금* 가입기업

*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매칭·적립하는 금융상품
(문의처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지원단 김한준 연구원 : 02-6009-4354)

3. 지원규모 및 예산

□ **'13년 추가지원** : 100억원, 약 1,100업체 내외 지원

구 분	지원분야		금액(안)	지원업체수(안)
직접지원	강제인증	▪ 고부가가치·고비용 해외규격인증 ▪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▪ 인증갱신지원	73억원	700
	임의 (강제성격)	▪ 강제성/글로벌기업 인증 발굴 지원 ▪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 ▪ PQ 기업 인증지원 ▪ 해외조달 진출지원(선택옵션)	18.5억원	400
간접지원	▪ 품목별·국가별 규격인증정보 조사·제공 ▪ 기술세미나 교육, 사업 성과평가 ▪ 사업관리		8.5억원	

※ 분야별 금액・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2) 지원비율 :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~90%(1개 인증당 최대 5,000만원까지 지원)비율로 차등지원

구 분	지원비율	기 준
예비수출기업	90%	내수기업(10만불 미만)
수출유망기업	60%	수출실적 500만불 미만
글로벌강소기업	40%	수출실적 5,000만불 미만

-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
-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협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지원
-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수출능력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

4. 지원내용

□ **지원내용 개요**

○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~90%(1개 인증당 최대 5,000만원까지 지원)비율로 차등지원

○ 세부 지원내용 : 1 고부가가치・고비용 해외규격인증, 2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지원 3 강제성/글로벌기업 인증발굴 지원, 4 인증갱신지원, 5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 6 PQ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7 해외조달 진출지원 등

지원분야	지원대상
▪ 고부가가치·고비용 해외규격인증	- 3,000 만원 이상 고가, 고부가가치 인증 - 의료기기, 건자재, 군사장비, 방폭, 건설기계, 케이블, 에너지, 화학물질 등
▪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 지원	- [별표 2]미국, 일본, 유럽(EU)을 제외한 모든 국가
▪ 강제성/글로벌기업 인증 발굴 지원	- [별표 1]의 182개 규격 이외의 모든 인증 - [별표 2]미국, 일본, 유럽(EU) 국가 인증(1차에 한함)
▪ 인증갱신지원	- [별표 1]의 182개 규격인증의 갱신
▪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	- 중진공 해외대형유통망 진출 선정기업
▪ 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	- 조달청 우수조달기업 중 해외조달 유망선정기업 - [별표 1] 해외규격인증획득 대상분야(182개 규격인증)
▪ 해외조달 진출지원(선택옵션)	- 강제성/글로벌인증분야, 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해외조달 진출시 소요되는 시험・인증비 등 지원(선택옵션)

○ 지원분야별 한도

(금액 : 천원)

지원분야	출연금한도				컨설팅 소요비용 한도
	최대한도	예비수출	수출유망	글로벌 강소	
▪ 고부가가치·고비용 해외규격인증	50,000	90%	60%	40%	4,400
▪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 지원	20,000	90%	60%	40%	-(*)
▪ 강제성/글로벌기업 인증 발굴 지원	20,000	90%	60%	40%	2,200
▪ 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	5,000	90%	60%	40%	-

*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의 경우, [별표 1]의 182개 규격에 포함되는 경우 한도 2,200천원, 신규규격인증 발굴의 경우 제한 없음(전문가 위원회 심사)

- 심화·맞춤형 지원

(금액 : 천원)

지원분야	출연금한도				컨설팅 소요비용 한도
	최대한도	예비수출	수출유망	글로벌 강소	
▪ 인증갱신지원	7,000	90%	60%	40%	-
▪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	5,000	90%	60%	40%	-
▪ 해외조달 진출지원	3,000	90%	60%	40%	-

1 고부가가치·고비용 해외규격인증

○ 해외규격인증 획득 시험·인증 비용(컨설팅비 제외)에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 인증의 경우,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

○ 의료기기, 건축자재, 군사용 장비, 방폭(防爆), 건설기계,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, 인증비용이 높은 분야 위주 지원

2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지원

○ 서식[별표1]의 182개 해외규격인증 중 미국, 일본, 유럽(EU)을 제외한 모든 국가 규격인증획득시 최대 2천만원 한도까지 지원

○ 182개 이외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신청시 원활한 정보수집 및 인증획득을 위해 컨설팅비 한도제한을 폐지(컨설팅비 과다 계상을 예방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에서 확정)

3 강제성/글로벌기업 인증발굴 지원

○ 민간인증기관 급증으로 인해 '임의규정'이지만 수출장벽으로 작용하는 강제성 규격 및 애플, GM 등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자체 규격인증지원

○ 서식[별표1]**182개 이외의 규격인증** 지원이 원칙이며, 최대 2천만원 한도까지 지원

※ 단,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4차 사업에서 조기 마감됨에 따라 1차 사업('13.10.8~11.30)에 한하여 미국, 일본, 유럽(EU) 규격인증 신청가능

4 인증갱신지원

○ 해외규격인증을 획득 후 수출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규격인증 유효기간이 도래한 기업 대상

○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3년, 2014년도인 경우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

5 해외유통망진출기업 시험검사

○ 국내기업의 해외 대형유통매장 진출을 위한 해외바이어 요구 규격인증 획득 및 제품시험비용 지원(최대 5백만원)

※ 해외대형유통망진출기업 시험검사 우대지원 외에 별도로 2개까지 타 지원분야 신청가능

※ 우대지원대상 중 경쟁발생시 선착순 또는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

6 PQ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

○ 조달청 우수조달기업 중 해외조달 유망선정기업을 우대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대 5백만원까지 규격인증획득비용 지원

* PQ(Pre-Qualified) 기업 : 국내 정부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를 쌓은 우수 중소 조달기업으로, 조달청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대상 기업을 의미('13.10월 현재 95개 기업)

※ 우대지원대상 중 경쟁발생시 선착순 또는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

⑦ 해외조달 진출지원

○ 강제성/글로벌기업 인증발굴 지원, PQ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분야에 참여한 기업은 추가적으로 해외조달 진출지원을 신청(최대 3백만원, 100개 기업 限, 경쟁이 있을시 평가점수 순으로 지원)

○ 선정되는 경우 해외조달 진출시 소요되는 추가적인 시험·인증비 등을 지원하며, 인증신청시 동시에 신청

6.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2013년 10월 8일(화) 09:00 ~ 2014년 6월 30일(월) 24:00까지

구분	1차 사업	2차 사업	3차 사업	4차 사업	5차 사업
신청·접수	'13.10.8~11.7	12.1~12.31	2.1~2.28	4.1~4.30	6.1~6.30
평가·선정	11.8~11.22	'14.1.1~1.20	3.1~3.20	5.1~5.20	7.1~7.20
협약체결	11.25~11.30	1.21~1.31	3.21~3.31	5.21~5.31	7.21~7.31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※ http://www.exportcenter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신청
(수출인증추가획득지원)

□ 신청 구비서류

○ [서식]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

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

○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http://www.exportcenter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[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] → [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] → [인증신청] → [해외인증신청]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

○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

-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 지원은 별도로 온라인신청 하여 관리기관(KTR)으로 신청서 제출

  * 해외유통망 진출기업은 요구시험 요청서(공문, 이메일등)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
  * 해외조달진출을 목표하는 업체는 신청서 기업특성-기타내용에 "해외조달진출 지원"에 체크

*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

7.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

□ 선정평가

○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

* 관계전문가 : 지방중소기업청 직원,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가점부여

- 지방소재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기업

-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* 및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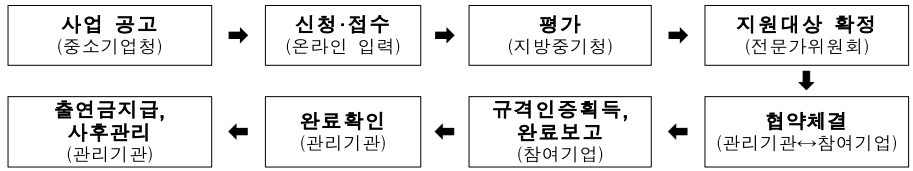
* 온라인/오프라인교육(KTL,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)

- 기타 혁신형기업(Inno-Biz, 벤처, 경영) 등

□ 지원대상 확정

○ **민·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'전문가위원회'**를 통해 중복신청, 지원비용/규격인증의 적정성,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

□ 추진절차



8. 기타 고려사항

□ 본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편성됨에 따라 **최장 1년에 한해 한시적**으로 시행되며, **추후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에 의해 세부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**

□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→평가→협약이 진행되나, **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**

□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
9. 문의 및 확인

담당기관		전화
사업총괄	중소기업청(해외시장과)	042-481-4575 4514
관리기관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(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)	02-2164-0083 0025

지방청명	전화번호	FAX	주 소
서울지방청	02)2110-6332	02)2110-0663	(427-700)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
부산·울산청	051)601-5170	051)341-0364	(618-819)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(송정동)
대구·경북청	053)659-2245	053)626-8771	(704-833)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
광주·전남청	062)360-9193	062)366-9671	(502-723)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
경기지방청	031)201-6945	031)201-6949	(443-761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인천지방청	032)450-1133	032)818-8364	(405-849)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
대전·충남청	042)865-6152	042)865-6159	(305-343)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
강원지방청	033)260-1672	033)260-1679	(200-944)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110
충북지방청	043)230-5371	043)235-2494	(363-883)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전북지방청	063)210-6482	063)210-6489	(560-860)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경남지방청	055)268-2542	055)262-5012	(641-060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
10. 사업설명회

□ 일시·장소 : **'13.10.14(월)~10.21(월), 전국 지방중소기업청**
※붙임 설명회 일정표 참조

[붙임] 설명회 일정표

일자	시간	해당지방청	장소	문의 및 접수
10월 14일(월)	10:30~12:00	경남중기청	3층 대강당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-2164-0023
	15:30~17:00	부산.울산중기청	3층 대강당	
10월 15일(화)	10:00~11:30	광주.전남중기청	2층 대강당	
	15:30~17:00	전북중기청	3층 대회의실	
10월 16일(수)	10:00~11:30	충북중기청	1층 인식개선교육장	
	15:30~17:00	대구.경북중기청	3층 대강당	
10월 17일(목)	10:00~11:30	경기중기청	2층 대강당	
	15:00~16:30	인천중기청	별관 대강당	
10월 18일(금)	14:30~16:00	대전.충남중기청	2층 대강당	
	14:30~16:00	강원중기청	1층 별관 대회의실	
10월 21일(월)	14:00~15:30	서울중기청	과천 기술표준원 본관 1층 중강당	

첨부1. 사업설명회 신청서 작성하여 jyohoh@ktr.or.kr로 메일 접수